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24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배준영・박대출・이종욱
이상휘・김은혜・안철수
곽규택・김예지・김미애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상당한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동물병원 의료비 공개제도 도입 등 반려동물 의료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 항목으로 신설하고 해당 지출에 대하여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

2제2항제4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문화체육사용분 및 반려동물의료지출분”으로,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반려동물의료지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대중교통이용분, 반려동물의료지출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나목 및 다목 중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각각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반려동물의료지출분”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반려동물의료지출분 + 문화체육사용

분”으로,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반려동물의료지출분 -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반려동물의료지출분) × 100분의 30”으로,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반려동물의료지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7호”를 “제2항제8호”로 한다.

4.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물의료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반려동물의료지출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려동물의료지출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물의료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제6호까지의----------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7호----------제8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물의료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반려동물의료지출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문화체육사용분 및 반려동물의료지출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반려동물의료지출분----------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6. ----------대중교통이용분, 반려동물의료지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출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	나.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반려동물의료지출분---

분의 30	----------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다.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반려동물의료지출분----------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1) ---------- ---------- ---------- ----------직불카드등사용분 + 반려동물의료지출분 + 문화체육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반려동물의료지출분 - 문화체육사용분----------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	2) ---------- ---------- ---------- ----------(직불카드등사용분 + 반려동물의료지출분) × 100분의 30----------

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반려동물의료지출분----------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⑪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8호----------